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 2013 - 호
의 결 연월일	2013. 11. . (제 회)

의 결  
사 항

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일부개정(안)  
신설·강화규제 심사안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연월일	2013. 11. .

# 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 .....	1
□ 요 약 .....	1
□ 제도(개정안) 개요 .....	2
II. 규제심사안 .....	3
1. 벤처캐피탈의 불공정 투자행위 금지 .....	3

# 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## 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<p><b>1.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투자 행위금지</b></p>	<p>○ &lt;신설&gt;</p>	<p>○ 창투사가 투자업체와 투자계약 체결시 다음 행위를 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영성과 하락 및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계약기간 전에 조기회수하는 행위</li> <li>- 투자금 조기회수시 상환준비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</li> <li>-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주식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행위</li> <li>- 프로젝트 투자시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행위</li> </ul> <p>⇒ (사유)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가 이슈화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규정을 신설</p>

## □ 제도(개정안) 개요

### (도입배경)

- 최근 언론 보도\* 등으로 인해 벤처투자시 발생하는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가 이슈화되고 있으며,
  - \* 관련기사 : (매일경제 '13.3.11) A01면 “캐피탈 횡포에 아마추어창업 좌절”, A03면 “일부 VC 3년내 상장 못하자 연이자 8% 붙여 투자금 회수”
- 국회에서도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\*
  - \* '13. 4. 9, 오영식 의원(국회 산업부 업무보고)

### (추진방안)

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과정에서 주요 불공정행위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금 조기 회수 등을 차단

### (주요내용)

창투사가 투자업체와 투자계약 체결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행위를 금지

- ① 경영성과 하락 및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계약기간 전에 조기회수하는 행위
- ② 투자금 조기회수시 상환준비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
- ③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주가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행위
- ④ 프로젝트 투자시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행위

## II. 규제심사안

### 1. 벤처캐피탈의 불공정 투자행위를 금지

#### 1)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○ 창투사가 투자업체와 투자계약 체결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4가지 행위를 금지

- ① 경영성과 하락 및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계약기간 전에 조기회수하는 행위
- ② 투자금 조기회수시 상환준비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
- ③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주가를 과도하게 조정하는 행위
- ④ 프로젝트 투자시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행위

⇒ (사유) 조합투자시 벤처캐피탈의 주요 불공정행위로 파악된 아래 4가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표준규약 개정이 필요

#### < 신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투자의 방법) ① ~ ④ (생략)  <신 설>	제30조(투자의 방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업체와 투자계약을 체결·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